

# 희망의 집수리 공사 시방서(일반)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 공사는 설계서 내역 및 시방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KS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KS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착수전에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기일 내에 공사 착수 및 준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중 안전 및 기타 관공서에 소요되는 제반수속 및 이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 수행으로 타 시설물 및 기타 기기에 오,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수행 중 내역서(계약 일위대가포 포함)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수행 중 곰팡이 발생이 많은 부분은 단열재 설치 후 도배시공을 우선으로 한다.
8.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제반법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9. 본 공사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보수공사중 기기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모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수행중 공사진척 및 상세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 작업 확인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12. 도배 및 바닥재 교체공사 시 전등기구(전등, 콘센트 등) 등을 반드시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수행 중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4. 모든 마감재료는 기존 설치된 것과 동일색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 후 현 상태 이상의 제품품질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보수 공사 후 발생한 고재 및 잔재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즉시 완전제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공사 작업자는 세대방문 시 본인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때 사업시행업체 대표 명함을 가구주에게 제공한다. 시공 후에는 가구주에게 작업한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7. 가구주의 AS요구 시에는 20일 내 재시공한다.
1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 시방서(건축편)에 따른다.